

(별표 1) <개정 2007. 7. 1, 2009. 7. 1, 2013. 8. 1, 2015. 9. 1>

**진료비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**

| 대상범위   | 초·재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타 진료비     | 종합검진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① 설립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체결하는 진료 계약에 의하여 지정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진료비감면위원회 심의에 의함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
| ② 유관기관과 본 의료원과의 협조로서 시행하는 의료봉사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삭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
| ③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을 수락한자  |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에 의함(진료비감면위원회에 같음함) |            |      |
| ④ 업무상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진료비 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
| ⑤ 임·직원(계약직, 임시직 포함), 울진군의료원 위원회 외부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%        | 10%  |
| 배우자 (계약직 포함)   | 5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%        | 10%  |
| ⑥ 직원가족(계약직 포함)-배우자 부모, 직계존비속   | 3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%        | 10%  |
| ⑦ 공익근무요원(본인)   | 5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%        |      |
| ⑧ 삭제   |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삭제         |      |
| ⑨ 업무상 재해(공상)를 입은 임·직원  | 진료비 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
| ⑩ 삭제   |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삭제         |      |
| ⑪ 법률 등에 의거 진료비 감면자로 명시된 자  | 관련 법률 등에 의함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
| ⑫ 의료원 내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직원 본인   | 3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%        |      |
| ⑬ 삭제   |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삭제         |      |
| ⑭ 삭제   |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삭제         |      |
| ⑮ 삭제   |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삭제         |      |
| ⑯ 울진군의료원, 요양병원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누적봉사시간 100시간 이상인자.<br>(단, 3개월이상 비활동중인자는 제외) | 1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%        |      |
| ⑰ 삭제   |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삭제         |      |
| ⑱ 국가유공자 유가족(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%(비급여포함) |      |
| ⑲ 의료원의 진료과실로 정신적, 물질적 손해를 입힌자  | 진료비감면위원회 심의에 의함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
| ⑳ 기타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| 진료비감면위원회 심의에 의함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
| 참전유공자 본인   | 2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%(비급여포함) |      |

\*.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을 뜻함